

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사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「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사도법 시행규칙

현행	개정안
제5조(사용검사) 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	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□ 사도법 시행규칙(별지 3호 서식)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

현행	개정안
[별지 3호 서식]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	(현행과 같음)
첨부서류	첨부서류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	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